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4 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김문수・주철현・이용선

천하람 · 양문석 · 권향엽

송재봉 · 김영호 · 장경태

조계원 · 문정복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전라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 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전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입원 및 외래진료의 자체충족률은 2022년 기준, 각각 66.1%와 69.2%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.

특히,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집적해 있는 전라남도 동부권의 경우 2021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상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0.72‱로 전국 평균인 0.43‱을 크게 상회하는 등 인명사고가 심각한 상황임.

그러함에도 2023년 전라남도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.7명으로 전국 평균인 2.2명에 비해 부족하며, 정부가 추산한 2035년까지의 부 족한 의사 인원 전체 10,000명 중 전라남도에서만 99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, 국립순천대학교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며, 전라남도 지역에 양질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,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,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 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다.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(안 제3조).
- 라. 국가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·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, 산업보건·첨단의료 분야 연구과

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·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마.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경비지원과 전라남도의 기금 설치, 물품양여, 토지 사용 등 각종 지 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 등).

법률 제 호

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, 의료 인프라 취약지인 전라남도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① 「고등교육법」 제18조, 제1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순천대학교(이하 "국립순천대학교"라 한다)에 의과대학 을 설치한다.
 - ②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은 전라남도 내 의료서비스 상황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수 있다.
- 제3조(입학정원) 교육부장관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다만, 입학자격·수업연한·교육과정·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고등교육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

- 제5조(예산지원의 특례) ① 국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·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, 산업보건·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 정의 수립·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 지원 및 내용,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지원기금의 조성) ① 전라남도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.
- 제7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 ① 국가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 대학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 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 대학에 무상으로 양여,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이

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,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, 대부 또는 사용・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8조(토지 등의 수용·사용)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- 제9조(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) ① 의과대학이 설치된 국립순천대학교(이하 "도내 국립대학교"라 한다)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